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사무과장 조상범

전화 054-832-6613

보 도 자 료

2020. 3. 11.(수)

자료문의 : 의성지청 201호
전화번호 : 054-832-6613
주책임자 : 사무과장 조상범

제목 **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·벌금 납부 완화조치 시행**

▣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(지청장 손진욱)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함께 **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(3. 10.부터 3. 14.까지)**을 운영 중임

▣ 또한 대구·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**벌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 요건을 완화**하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**벌금 납부 완화조치**를 시행함

▣ 의성지청은 지청장이 단장인 **'코로나19 대응단'**을 중심으로 향후 **역학조사 거부·방해, 마스크 매점매석, 방역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** 범죄에 신속·엄정 대처할 예정임

Ⅰ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 운영

● 의성지청은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하여 매점매석 자진신고자에 대한 **특별자진신고기간(3. 10.~3. 14.)**을 운영 중임

- 위 기간 내 자진신고한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적판매 확약서 징구 후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 예정
- 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'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정'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 반영해 엄정 처리 예정

※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에 의거, 징역 2년,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 대상

Ⅱ 벌금 납부 완화조치 시행

● 현행 **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실시**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벌금 즉시 완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벌금 납부 편의를 확대함

- **6개월 범위 안에서** 미납액 균등 납부 및 납부기간을 연장하고,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분납·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**미납액의 일부 납부조건 없이** 분납·납부연기 허가 예정임

Ⅲ 코로나19 대응단 구성하여 관련 범죄 엄정 대응

● 의성지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'20. 2. 24. 지청장을 단장으로 한 **「코로나19 대응단」**을 구성하여 **가짜뉴스대책반, 보건범죄대책반, 상황반**을 편성·운영 중임

● 향후 **△역학조사 거부·방해, △마스크 매점매석, △마스크 등 방역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**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엄정 대처하여 **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**하겠음 ▨

의성지청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

▶ **우편 :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301호**
▶ **전화 : 국번 없이 1301 / 의성지청 054-830-4631(주간), 054-830-4290(야간)**
▶ **이메일 : epro@spo.go.kr**
※ **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 : 02-2640-5064**